

『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7월 8일

제197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10% 배상금을 포함하여 환급하는 내용으로 개선(안 제7조)
- 보증금 조항 삭제
 -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토록 한 보증금 조항 삭제
-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
 - 예술회관의 사정에 의해 사용허가취소 등 발생하는 손해는 시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 삭제

○ 별표 변경

- 공연 시작 시간의 조정, 전시실 대관 1일 기준시간 신설
-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 등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제136조, 제139조, 제144조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합 의 : 규제개혁T/F팀과 합의됨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-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,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7조에서 시 또는 예술회관의 사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이 정지될 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던 조항을 10퍼센트의 배상금을 포함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, 안 제7조3항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던 규정을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고,
-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소정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규정 등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부과토록 한 종전의 제8조, 제9조제2항, 제13조제3항을 삭제하였고,
- 별표에서 공연 시작 시간의 조정, 전시실 대관 1일 기준시간 신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였고,
-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귀책사유별 반환 규정을 반영하고 보증금 납입 규정을 삭제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수정하는 등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수정, 삭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